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물류창고 보관물품 상세정보 게시·정보제공 의무화〉
■ 백혜련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922호)

2025. 11.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임 종 수

목 차

□ 백혜련의원 대표발의(2211922)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2
1. 물류창고 보관물품 상세정보 게시·정보 제공 의무화(안 제21조11 신설)	2

□ 백혜련의원 대표발의(221192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백혜련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8. 1.
3. 회 부 일 : 2025. 8.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물류창고업 영업행위 중 보관 물품에 대한 정보게시 의무가 없어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대가 현장 활동시 위험성, 화재하중 등 적재 물품 정보를 알 수 없음으로 인명구조, 화재진압 등 소방활동 시간이 지연되어 인명피해 사례가 발생함.

따라서 물류창고 물품 보관 시 경비실 및 방재실에 보관 물품에 대한 상세 정보를 게시토록 의무화하여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사고 대응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안 제21조의11 신설).

Ⅲ. 검토의견

1. 물류창고 보관물품 상세정보 게시·정보 제공 의무화(안 제21조 11 신설)

개정안은 물류창고업자로 하여금 물류창고에 보관된 물품에 대한 상세 정보를 경비실 및 방재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비치하여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사고대응 관계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21조의11(정보제공) 물류창고업자는 물류창고에 보관된 물품에 대한 상세 정보를 경비실 및 방재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비치하여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사고대응 관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물류창고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등록된 물류창고업자는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보관 물품에 대한 상세정보를 게시하여야 한다.

가. 검토의견

물류창고란 화물의 저장·관리, 집화·배송 및 수급조정 등을 위한 보관시설·보관장소 또는 이와 관련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¹⁾이며, 물류창고업은 화주(貨主)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창고에 화물을 보관하거나 이와 관련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을 하는 사업²⁾임. 현행법에 따라 물류창고업으로 등록된 창고 개수는 총 5,749개소로 나타났다.

【 물류창고 등록현황 】

(단위 : 개소)

합계	물류시설법		관세법	화학물질 관리법	식품위생법	축산물위 생법	수산물식품 산업법
	창고업	항만창고	보세창고	보관 저장업	냉동냉장	축산물 보관	냉동냉장
5,749	2,139	258	764	264	876	1,013	435

※ 자료 :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그런데 최근 물류업의 성장에 따라 물류센터 안전사고의 발생도 증가하고 있는데, 2020년 경기 군포 한국복합물류센터 화재('20.4, 창고건물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의2. “물류창고”란 화물의 저장·관리, 집화·배송 및 수급조정 등을 위한 보관시설·보관장소 또는 이와 관련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의3. “물류창고업”이란 화주(貨主)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창고에 화물을 보관하거나 이와 관련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에서 자동차의 보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에서 자전거의 보관

나.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자가 여객의 수하물 또는 소화물을 보관하는 것

다. 그 밖에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저장소에 보관하는 것 등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것

2개층 전소), 2021년 6월 경기 이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21.6, 사상자 2명, 사망 1명), 최근 발생한 2025년 5월 경기 이천 물류창고 화재('25.5., 인명피해 없음) 등 인적·물적 피해가 이어지고 있음.

소방청의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10월까지 창고시설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는 총 6,357건이었으며, 인명피해는 266명(사망 24명, 부상 242명), 재산피해는 1조원에 달했음.

【 창고시설 화재발생 및 인명·재산피해 현황 】

구분		화재 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천원)	재산피해/건당 (천원)
			사망	부상	계		
합계		6,357	24	242	266	1,066,778,820	167,812
창고 시설	소계	6,357	24	242	266	1,066,778,820	167,812
	냉장 냉동창고	417	3	12	15	47,928,322	114,936
	창고 물품저장소	4,014	14	174	188	969,841,445	241,615
	하역장	21	0	1	1	120,900	5,757
	기타 창고	1,905	7	55	62	48,888,153	25,663

*기간 : 2021~2025.10.

※ 자료 :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2.9. 「물류창고업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을 시행하여 물류창고업 등록 시 화재발생 방지를 위해 발화원 제거·감소, 화재 발생 시 소방서 통보 체계 마련 등 화재 예방, 화재 대응, 화재 대비, 기반 자료 부분에 각 조치를 포함한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³⁾

작성지침에 따르면 ‘화재발생 시 소방활동의 지원 등을 위하여 물류창고의 구역별 보관 물품의 종류 및 평면도·소방설비도 등 건축물에 대한 상세 정보를 경비실, 방재실(다른 부분과 방화구획) 등 사람이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장소에 갖추 놓거나 전산으로 관리하며 화재발생 시 소방관서 등 재난대응 기관에 제공하는 조치’에 대해 화재안전 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이행하도록 규정하여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의무가 이미 반영되어있음.

또한,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자체장 등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화재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으며, 1년 주기로 제출한 화재안전 관리계획서의 유효성·타당성을 검토하여 갱신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3) 「물류창고업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3조(적용범위) ① 물류창고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해당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물류창고업 등록 후 매년 12월 31일까지 화재안전 관리계획서의 유효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화재안전 관리계획서에 작성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접수하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1조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화재안전 관리계획서의 확인 등을 위하여 현장을 점검할 수 있으며, 관할 소방서장에게 화재안전 관리계획서에 대한 검토(단, 별표1의 가목3)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를 요청할 수 있으며, 소방서장은 화재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소방법령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 「물류창고업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 주요 내용 】

구분	주요내용
화재예방	- 발화원 제거·감소, 발화원-가연물 간 안전거리 확보·차단막 설치 등 화재예방 조치 계획 - 무허가 위반물 보관 금지 등 보관물품 관리 조치 계획 - 전기시설·이송장비 등 점검·관리 계획 - 화기작업 전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신고체계 - 냉장·냉동 시스템 과열 방지 관리 조치계획 등
화재대응	- 화재 발생 시 즉시 소방서 통보 체계 - 소방시설 위치 표시 및 방화문·방화구획 조치·관리 계획 등
화재대비	- 근무자·방문자 등에 대한 화재대비·대응 교육 계획 - 화재위험 제거·감소를 위해 수행한 작업 기록 체계
기반자료	- 소방활동 지원 자료(평면도, 소방설비도, 보관물품 종류 등) 구비·제공 체계 - 적재형태, 보관시설, 포장재 재질등의 정보의 작성·보관 및 제공 체계 - 지하층 면적·용도 정보 작성·보관 및 제공 체계 <개정안 관련 내용> 라. 기반자료 부분 1) 화재발생 시 소방활동의 지원 등을 위하여 물류창고의 구역별 보관 물품의 종류 및 평면도·소방설비도 등 건축물에 대한 상세 정보를 경비실, 방재실(다른 부분과 방화구획) 등 사람이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장소에 갖춰 놓거나 전산으로 관리하며 화재발생 시 소방관서 등 재난대응 기관에 제공하는 조치 2) 물품 보관의 적재(쌓아 둠) 형태에 대한 정보를 작성·보관하며 필요시 제출하는 조치

개정안은 현재 고시로 규정되어있는 물류창고 보관 물품 상세정보 게시 및 사고대응 관계자에 대한 제공 의무를 법률로 상향하여, 화재 발생 시 화재 진압을 위한 소방대가 적재물품 정보를 알 수 없어 현장 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및 화재진압 지연을 방지하고, 소방 활동의 신속 지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물류창고업의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물류창고업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국토교통부 고시)」과 같이 개정안의 내용뿐만 아니라 발화원의 제거·감소, 화재 발생 시 즉시 소방서로의 통보 체계 마련 등 “화재 예방, 화재 대응, 화재 대비, 기반 자료” 측면에서 화재안전 을 위한 다각적인 의무 이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보관물품 상세정보 게시’ 의무만 법률에 규정하는 것으로 충분한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개정안의 의무규정 신설 시 의무 확보의 실효성을 위해 의무불 이행 시 부과되는 과태료 등 제재수단을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으나, 개정안은 별도의 제재 조치 및 실효성 확보 수단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셋째, 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 개정안은 ‘물품 상세 정보를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비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물류창고업의 특성상 물품이 상시 입출고되어 모든 세부정보 및 수량의 실시간 갱신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물류창고업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과 같이 상세 정보를 비치하거나,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원활한 사고 대응을 위하여 설계도서를 방재실에 비치하도록 하고 있는 유사 입법례를 고려할 때,⁴⁾ 「물류창고업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과 같이 건축물에 대한 설계도서 중 평면도·소방설비도 등의 자료를 비치하여 사고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게시하는 정보의 범위 및 갱신 주기 등 정보 게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하위법령에 위임 근거를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나. 국토교통부 의견

「물류창고업 화재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지침(국토부 고시)」에서 구역별 보관물품 정보 등을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 갖추어 놓거나 전산으로 관리하여 제공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1년 주기로 관리계획서의 유효성·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개정 실익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임.

4)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설계도서의 비치 등)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제16조에 따른 종합방재실에 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비치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이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설계도서의 비치 등) 법 제20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란 다음 각 호의 설계도서를 말한다.

1.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및 시방서(示方書)는 제외한다]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설계도서

문 의 처
02)6788-5580